

GYRI ISSUE BRIEF  
이슈브리프

제19호 2020.05.

# 고양시 협동조합 운영현황과 과제

해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허선주(협동조합 MBA 석사)  
hur1220@hanmail.net

경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문정화(사회복지학 박사)  
jhmoon@gyri.re.kr

## Contents

- I. 협동조합의 개념과 원칙
- II. 협동조합 현황 및 사례
- III. 고양시 협동조합 운영 현황
- IV. 고양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요약

사회적 경제조직의 대표적인 협동조합이 시장경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 9월 현재 전국에 16,123개의 (www.coop.go.kr 기준)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와 공동의 필요와 욕구를 가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결사체라는 2가지 특징에 있다. 또한 1인 1표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협동조합 운영의 핵심이다.

협동조합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커뮤니티의 사회경제적 임파워먼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협동조합’과 ‘고용’과 연결하여 살펴보면 협동조합 노동자는 효율성에 대한 탐구, 공동의 유연성, 참여의식, 가족과 같은 환경 및 강력한 정체성을 경험하고 있으며(www.ica.coop) 협동조합은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사회양극화 해소 등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모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 107만의 고양시는 아름다운 전원도시이며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지만 제 1기 신도시로 지역의 개발편차, 빠른 속도의 고령화, 교통난 등의 당면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베드타운을 벗어나 일과 생활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 구조를 갖는 자족 가능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고양시 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고양시 협동조합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지역사회의 자급자족 기능을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고양시 협동조합 대부분이 소규모이고 영세하며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협동조합 종 매출액이 년 3천만 원 이하가 63%로 나타났으며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 고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매출 부진의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이 약하고 차별화 전략의 부재로 판단된다. 둘째, 협동조합의 이사회 기능이 약하며, 민주적 의사결정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와 이사회, 감사 등 조직의 기관 운영이 각각의 역할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조합원 규모나 임원의 수가 소규모이다 보니 조직의 거버넌스 구조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협동조합 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창기에 협동조합을 설립한 곳은 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재한 상태에서 설립 한 경우도 있으며, 협동조합의 철학과 운영원리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준비하기보다는 설립요건만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설립 후, 역량 강화 교육을 자체 기획하여 진행하거나 조합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은 부재하다. 넷째,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와의 네트워크가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협동조합 설립 후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 및 지역 안의 중간지원 조직의 존재에 대한 인식도 떨어졌다.

본 고에서는 고양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한다. 단기과제로 첫째, 협동조합의 설립과 지원 업종별 컨설팅이 가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며 조직, 경영, 인사, 노무 등의 전문가 집단의 자문단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결합한 협동조합 교육 활성화해야 하며 셋째, 경력을 활용한 신·중년 일자리 사업과 협동조합과의 매칭 필요하다. 넷째, 전통산업에서 혁신적인 산업 방향으로 신규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다섯째, 협업과 공유를 만들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비즈니스센터 마련해야 하며 여섯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같은 정책을 위한 선결과제로 우선 고양시의 특징과 당면한 지역의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민민,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한다. 또한 지역 안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산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립을 제안한다.

### I. 협동조합의 개념과 원칙

GYRI

#### □ 협동조합의 개념

-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조건과 환경에 따라 협동조합의 성장배경이 다르고 협동조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개념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을 조합원의 공동사업과 조합원의 권리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외국의 경우는 조합원의 소유와 통제, 자율성을 보다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표 1> 협동조합의 개념

구분	협동조합정의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한국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
유럽 협동조합법	협동조합은 공통의 이해를 가진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공동소유체 조직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재구성<sup>1)</sup>

#### □ 협동조합의 원칙

- 1844년 근대 협동조합의 효시가 된 영국의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The 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은 운영의 원칙을 만들어 협동조합 운영
- 협동조합 원칙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원칙의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었지만 협동조합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지켜야 할 운영원리이며 기본 정신을 담고 있으며 오늘날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는 아래와 같이 7원칙을 제시함

1) 기획재정부(2017). 『협동조합 업무지침』, 2017.

<표 2> 협동조합의 원칙

로치데일협동조합 원칙 (1844)	협동조합 원칙 (ICA, 1995)
제1원칙. 1인 1표의 민주적 통제	제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제2원칙.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제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제3원칙. 출자금에 대한 이자의 고정 또는 제한	제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제4원칙. 잉여금 분배	제4원칙. 자율과 독립
제5원칙. 현금거래	제5원칙.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제6원칙. 순정물품만 취급	제6원칙. 협동조합 간 협력
제7원칙. 상호거래 및 교육을 위한 적립	제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제8원칙.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	

<출처> 영국협동조합의 한 세기, ICA, 재구성<sup>2)</sup>

## □ 협동조합과 다른 조직 비교

-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그리고 사단법인은 각 조직의 설립근거와 목적, 소유와 통제, 이익의 배당의 차이가 있으며 이 조직들을 비교하면 다음 <표 3>과 같음

<표 3> 협동조합과 다른 조직의 비교

구분	주식회사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근거법률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민법
설립목적	이윤극대화	조합원편익증대		공익
설립방법	신고제	신고제	인가제	인가제
성 격	수익형사업	원기형사업		지출형사업
가 입	폐쇄형	개방형		개방형
소 유	주주 (주식소유자)	조합원		사원
자 본	필수출자	의무출자		자발적납부
자본조달	증자, 채권발행 등	조합원 출자	조합원출자, 기부, 후원금	기부, 후원금 등
의 결 권	1주 1표	1인 1표		1인 1표
경영기구	-주주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혹은 대주주의 자체경영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또는 선출직 상임조합장		-사원총회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배당	투자배당	기여배당	배당없음	배당없음

<출처> 기획재정부 재구성

2) G.D.H. 콜(2015). 『영국 협동조합의 한 세기』, 그물코.

##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비교

- 일반 협동조합이 영리법인인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임. 두 조직은 설립, 사업, 경영공시, 법정 적립금, 배당, 청산, 감독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음

<표 4>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비교

구 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조합원수 200인 이상 또는 자본이 30억 원 이상의 경우 의무	의무사항
법정 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자기 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 *자기 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 국고 등 귀속
감독	관련내용 없음 (*상법 등에서 준용)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 (관계부처)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인가 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출처>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업무지침』, 2017.3.

## II. 협동조합 현황 및 사례

**GYRI**

### □ 세계 협동조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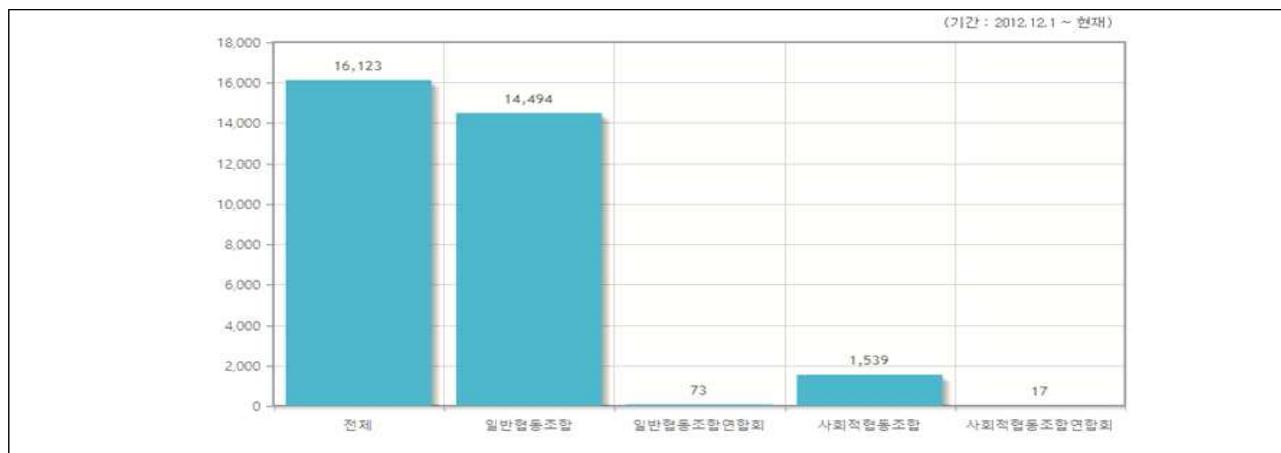
<표 5> 세계 협동조합 현황

	86개스위스 미그로와 스위스 코업 등 2개의 최대 생협이 GDP의 8% 창출
	덴마크 소매시장의 36.4%를 협동조합이 점유
	프랑스 소매금융의 60%, 농식품의 40%를 협동조합이 점유
	협동조합기업인 라보은행이 네덜란드 전체 예금거래의 40% 점유
	에밀리아로마냐주 GDP의 30% 창출, 전국 일자리 100만개 창출
	전국민 3가구 중 1가구가 협동조합 회원, 전체 농민의 91%가 농협회원, 생활협동조합이 전체 식품시장의 5.9%점유
	인도네시아 전체 가계의 27%가 협동조합 회원(약 8000만명), 협동조합이 29만명에게 일자리 제공

### □ 국내 협동조합 현황

- 국내 협동조합 설립 수는 2019년 9월 현재 16,123개이며 경기도는 2,922개가 설립되어 있음

<그림 1> 국내 협동조합 설립 현황



<출처>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http://www.coop.go.kr)) 기준

## □ 볼로냐 협동조합 사례

- 에밀리아 로마냐 주(인구 약 430만)는 8천여 개의 협동조합과 40만개의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발전을 선도
- 지역 GDP의 40%를 협동조합이 점유, 주도인 볼로냐 시에서는 협동조합 경제비중이 45%를 차지
- 거주자의 60%가 적어도 하나의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거주자의 10%가 협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음
- 볼로냐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서비스의 87%가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
- 협동조합이 매우 다양하며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통해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모델

<그림 2> 볼로냐 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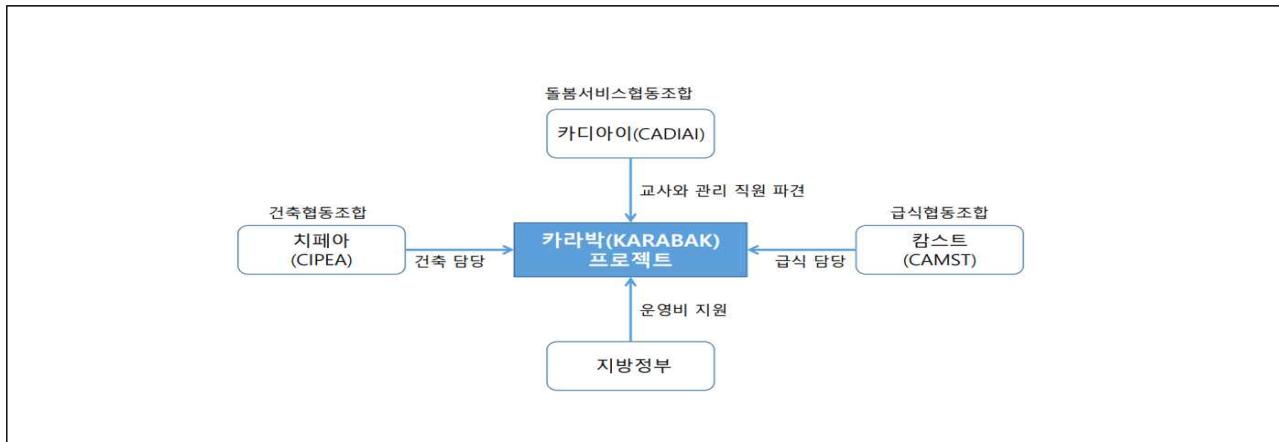
〈 성공요인 〉

-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하나의 지역경제 시스템에서 협업체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획득
- 협동조합 네트워크 형성을 전략적인 수준으로 결합
- 협동조합간의 협동 원칙이 협동조합운동의 경제적 전략으로 실현.
- 협치와 협력을 강조하는 강력한 협동조합 연합회의 존재

## □ 카라박(KARAPAK) 프로젝트

- 볼로냐 시정부와 다수의 민간 협동조합이 협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보육정책
- 볼로냐 시정부가 부지와 운영비를 부담하고 어린이집 건설비용은 건설협동조합이 공동 부담
- 보육협동조합은 이를 운영하고 급식협동조합이 급식을 제공
- 협동조합들은 일정기간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 후 소유권을 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
- 카라박 프로젝트를 통해 볼로냐시는 보육시설을 확충했고 조합원들은 양질의 양육서비스를 받으며 일자리까지 생기는 등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운영의 우수사례로 꼽힘

<그림 3> 카라박 프로젝트



## □ 충남 홍성군의 행복농장

- 충남 홍성군은 협동조합 '행복농장'을 사회적농업 지역 거점농장으로 집중 육성
- <행복농장> 전국 최초로 생산형 차유농업 체험 농장으로 "장애인의 재활 및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농업을 통해 직업재활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음

<그림 4> 행복농장



## □ 도봉구 꿈빛는 마을 방아골 협동조합

<그림 5> 꿈빛는 마을 방아골 협동조합



## III. 고양시 협동조합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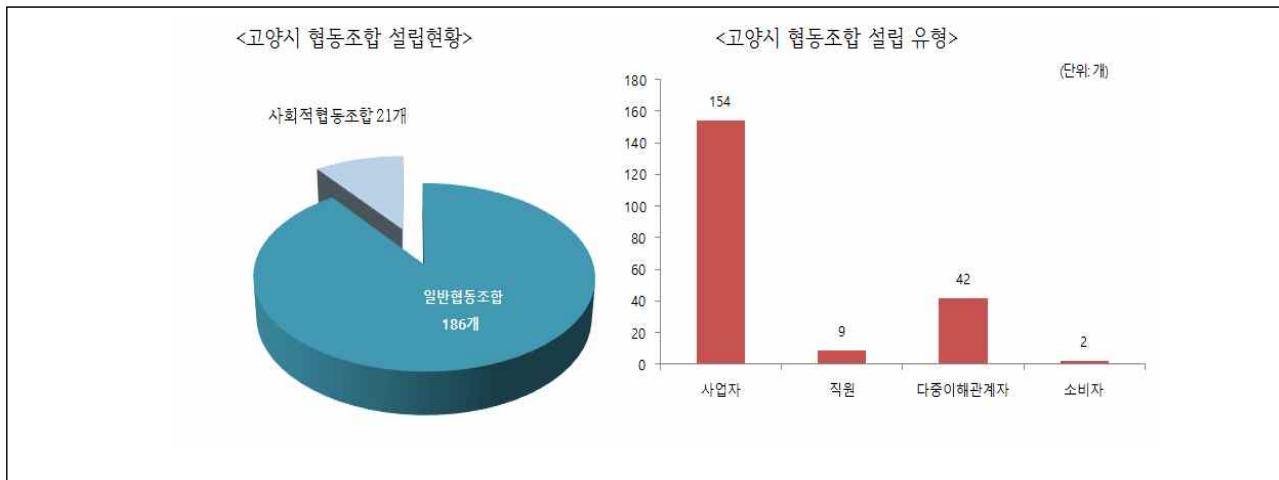
**GYRI**

### □ 일반 현황

#### ○ 설립현황 및 설립유형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고양시 협동조합은 조사기간 기준(2019.7.12.)<sup>3)</sup> 현황은 다음과 같음

<그림 6> 고양시 협동조합 설립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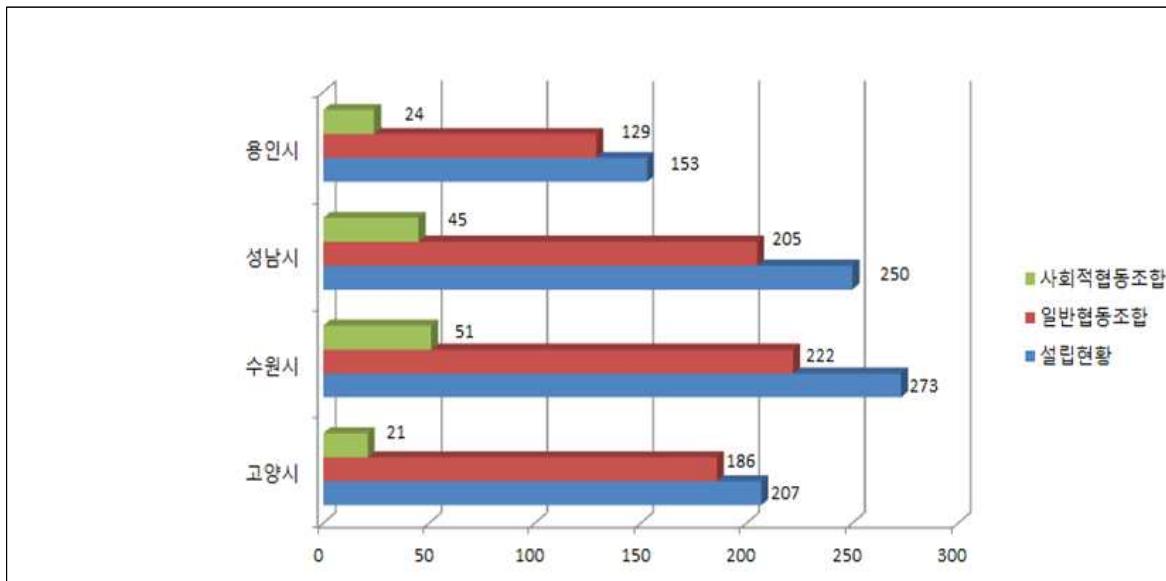


3)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http://www.coop.go.kr)) 기준

○ 타지역과 비교

- 인구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4개 지역과 비교해 본 결과, 협동조합 설립 수는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순이며, 사회적 협동조합 수는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 고양시로 나타남

<그림 7> 타 지역과 협동조합 설립현황 비교



<출처>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http://www.coop.go.kr)) 기준

○ 지역별 협동조합 현황

- 지역별 협동조합 수는 일산동구>덕양구>일산서구> 순으로 나타남

<그림 8> 지역별 협동조합 현황



<출처>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http://www.coop.go.kr)) 기준

## ○ 연도별 협동조합 설립 현황

- 고양시 협동조합의 연도별 설립현황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활발하게 설립이 되었으나 2017년도부터는 설립이 주춤한 상황임
- 협동조합 미운영 비율은 33.8%로 협동조합 사업체로서 운영은 사실상 중단 또는 전화번호가 다르거나 타 지역 이전 포함된 수치임

**<표 6> 연도별 협동조합 설립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설립 수	36	39	34	38	17	26	17	207
운영중단	12	20	11	9	4	1		57
전화번호 상이	7	1	1	1		0		10
타 지역 이전				2		1		3
미운영비율(%)	52.8%	53.8%	35.3%	31.6%		7.7%		33.8%
전화번호 미기재	1	3	4	1		8	7	24

## □ 설문조사 결과

### ○ 설문 응답자 현황

**<표 7> 설문조사 응답현황**

(단위: 개소, %)

구분	내용	설문 응답자수	비율
협동조합 대표자 성별	남	16	53%
	녀	14	47%
협동조합 대표자의 연령대	40대	6	20%
	50대	16	53%
	60대 이상	8	27%
협동조합 설립연도	1년 이상	7	23%
	3년 미만	13	43%
	5년 미만	5	17%
	5년 이상	5	17%
설문응답자 직책	이사장	22	73%
	이 사	3	-
	사무국장	5	17%

## ○ 조합원과 임원 수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목표, 자본조달, 이해관계자간의 이해 조정, 이익 배당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협동조합의 소유주인 조합원의 민주적 참여로 결정됨
- 의사결정에 중요한 조합원, 임원, 의결구조에 있어 소수의 조합원인 5명(23%)에서 10명(40%)이하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사회 구성으로는 이사장, 감사 포함 5명 이하(73.3%)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합원 5명으로 설립하여 임원진을 구성한 경우, 탈퇴 등의 사유로 조합원 변동이 있을 시 협동조합 존립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협동조합 총회 및 이사회 운영 현황

- 협동조합이 일반 기업과 다른 점 중 하나는 출자자수와 상관없이 조합원 1인 1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조합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임
- 소규모 조합원 수의 협동조합이 많기 때문에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총회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총회 → 이사회 → 운영위(또는 실무회의) 구조 형태를 띠고 있음
- 총회는 73%가 1년에 1회, 24%가 2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57%가 1년에 6회 이하로 운영하고 있음. 소규모이고 영세한 협동조합일수록 이사회 기능이 약함
- 결산서는 80%가 작성하고 20%는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매출이 미미하기 때문임
- 기관의 82%가 결산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나 운영회의 보고하는 각각 14%, 4%로 그 비율은 낮음

## ○ 재무현황

- 협동조합의 규모가 대부분 소규모로 매출액 1,200만원 이하가 50%에 이름
- 출자금 규모는 1백만원 이하도 있으며 3백만원과 600만원 사이가 20%로 가장 많음
- 조사대상의 23%가 차입금이 있음

## ○ 교육현황

- 협동조합의 7대 원칙 중 제 5원칙이 교육, 훈련 및 정보의 제공으로 협동조합의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
- 협동조합 설립이후, 조합원을 위한 교육 진행여부에 있어 진행한 적이 없는 경우가 57%임
- 교육내용은 협동조합 교육> 임원교육> 총회, 세무교육> 리더십 교육 순으로 나타남

## ○ 고용현황

- 조사대상 협동조합 중 고용이 있음(10개 협동조합에서 37명 고용, 33%), 고용없음 (20개, 67%)로 나타남
- 근로자 수는 1~2명이 가장 많았으며, 물류위탁계약 조건으로 고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음
- 전체 고용 인원(37명) 중에서 상근직은 26명 (70%), 시간제 근로자는 11명(30%)으로 나타남

- 협동조합이 고용창출이나 유지가 어려운 이유는 인건비 부담과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라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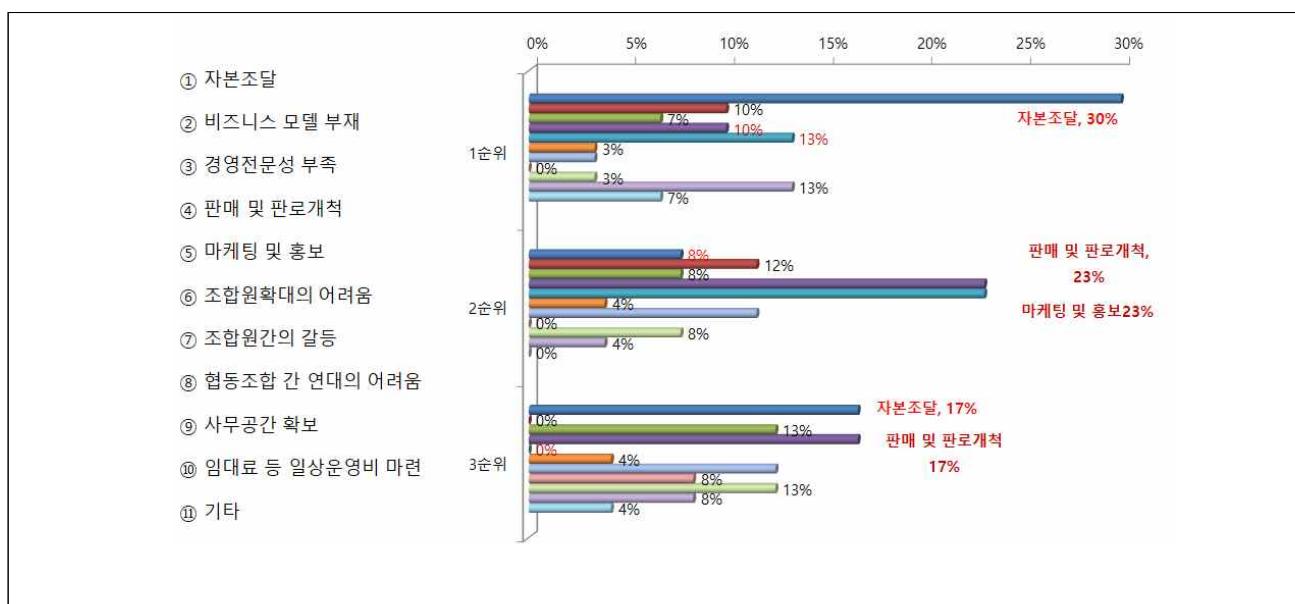
<그림 9> 고양시 협동조합 운영 현황



### ○ 협동조합 운영의 어려움

-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자본조달> 판매 및 판로개척> 마케팅 및 홍보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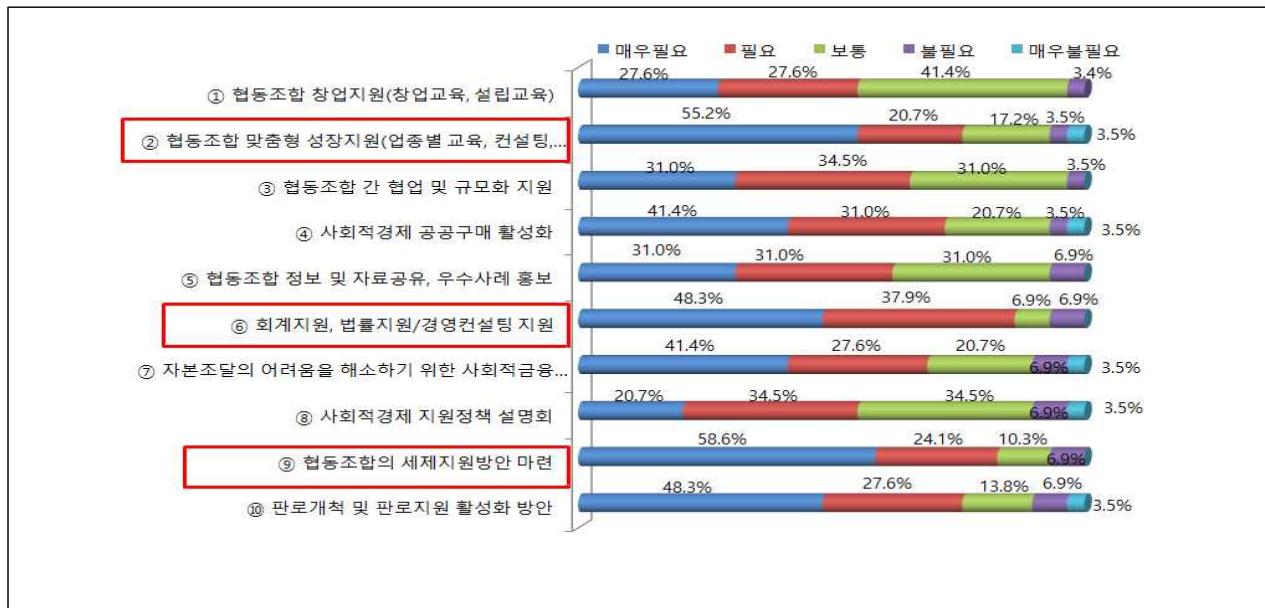
<그림 10> 협동조합 운영의 어려움



## ○ 협동조합 필요 지원정책

- 협동조합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의 세제지원 방안 마련’이 58.6%로 매우 필요도가 높았으며, ‘협동조합 맞춤형 성장지원(업종별 교육, 컨설팅)’이 55.2%, ‘회계지원, 법률지원, 경영 컨설팅지원’ 48.3%, ‘판로개척 및 판로지원 활성화 방안’ 48.3% 순으로 응답

**<그림 11> 협동조합 필요 지원정책**



## □ 집단 심층 인터뷰

### ○ 심층인터뷰 개요

- 일시: 2019년 8월 12일
- 참가자: 협동조합 이사장 5명(남성 4명, 여성1명 / 50대 4명, 60대 이상 1명)

### ○ 심층인터뷰 내용

-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과 전략 필요
- 협동조합의 설립과 지원을 위한 지역 안에서 협업체 및 자문단 필요
- 인건비 지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 강구
- 협동조합 간 연대,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상호거래 등을 강화하여 협업화 필요
-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센터 마련

## IV. 고양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과제



### 협동조합의 설립과 지원 및 업종별 컨설팅을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 협동조합은 자조, 자립, 자치가 기본 원칙으로 자생력이 있어야 하지만 협동조합 설립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 컨설팅 등을 담당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 협동조합 운영 시 겪는 조직 갈등, 인사, 조직, 경영, 인사, 노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의 자문단이 구성되어 상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결합한 협동조합 교육 활성화

- 업종별 교육, 실무 강화 교육, 총회 교육, 협동조합 포럼 등 여러 주제에 대한 협동조합 교육을 활성화가 필요함

### 경력을 활용한 신중년 일자리 정책 등 기존의 사업과 연결

- 협동조합은 실무적으로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만 인건비가 부담되는 상황임
- 정부 정책에 따른 일자리 사업을 매칭하거나 사회공헌 등의 활동과 연결하여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 전통산업에서 혁신 산업 방향으로 전환 필요

- 협동조합 사업도 라이프스타일에서부터 지역사회의 변화 등을 고려한 혁신성 필요
- 인공지능 시대에서 협동조합은 무엇을 어떻게 변화해야하고 적용해야하는지 지속가능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센터 마련

- 인구 107만 고양시는 협업과 협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리빙랩 등의 비즈니스 공간 확대가 필요함
- 비즈니스 센터에서 청년, 여성, 시니어들이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 협업을 통해 창업과 창직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 지역의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 지난 2018년 고양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조사 연구 사업을 실시함
- 지역자원조사를 토대로 6개 의제사업 ①사회적 도시농업 ② 도시재생 ③ 일자리 ④ 방과 후 지역 돌봄 ⑤ 보육 ⑥ 청소년 의제를 선정하였음
- 고양지역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의제를 발굴하였음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촉진하려는 움직임이 부족함
- 고양시의 정책과 제도와 결합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추진 필요

## □ 민과 민, 민과 관의 거버넌스 강화

- 많은 협동조합이 정보 획득, 네트워킹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민관의 협력이 협동조합 활성화의 핵심 전략이므로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략적 네트워크 강화 필요

## □ 사회적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 경기도 화성의 경우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기금 사용에 대한 합의 및 결정을 하고 있음
- 고양시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여러 분야 전문가를 모집하여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필요

##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2017). 『협동조합 업무지침』, 2017.  
G.D.H. 콜(2015). 『영국 협동조합의 한 세기』, 그물코.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http://www.coop.go.kr)) 기준. 접속일 2019.9.10

# 고양시정연구원 이슈브리프

제19호

발행일 2020.5.13.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TEL 031.8073.8341  
FAX 031.8073.0710  
HOMEPAGE [www.gyri.re.kr](http://www.gyri.re.kr)  
ADDRESS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고양시정연구원(GYRI)

-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의견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인용할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